

2018년 10월 13일 시행 / 2018년 소방공무원 하반기 필기시험

소방관계법규 경력경쟁 기출해설(B책형)

해설 - 김진수 교수(소방사관학원)

1. 「소방기본법」상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옳게 연결한 것은?

- 가. (㉠)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나. (㉡)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다. (㉢)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 자를 말한다.
- 라. (㉣)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마. (㉤)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바. (㉥)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	㉡	㉢	㉣	㉤	㉥
①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조장
② 방호대상물	경계지역	입회인	소방서장	지역대	소방대장
③ 방호대상물	경계지역	입회인	소방서장	지역대	소방조장
④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정답] ④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방기본법」상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 ②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④ 소방청장, 경찰청장, 소방서장

[정답] ③

▶ 「소방기본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소방기본법」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에는 그 날부터 ()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① 7 ② 10 ③ 12 ④ 14

[정답] ④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기본법」상 규정하는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옳게 연결한 것은?

- 가.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나.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다.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라.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마.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바.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사.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아.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 | <u>소방지원활동</u> | <u>생활안전활동</u> |
|---|---------------|---------------|
| ① | 가-나-다-라 | 마-바-사-아 |
| ② | 가-라-마-사 | 나-다-바-아 |
| ③ | 마-바-사-아 | 가-나-다-라 |
| ④ | 나-다-바-아 | 가-라-마-사 |

【정답】 ①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1.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5.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②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
 ③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 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④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정답] ②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6. 「소방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소방자동차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소방자동차의 화재진압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7. 「소방기본법」상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소방대장

[정답] ①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8.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기준수량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화류 : 1,000 kg 이상

② 사류 : 1,000 kg 이상

③ 벼짚류 : 1,000 kg 이상

④ 님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 kg 이상

[정답] ①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특수가연물

[별표 2]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품 명		수 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벗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합 성 수 지 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9.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설명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가. 화재경계지구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자 하는 때 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의 쌓는 높이는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제곱미터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 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 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소방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소방청장 등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일부터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	㉤	㉥
①	7	7	14	40	15	30
②	7	10	15	60	15	20
③	10	7	14	40	10	20
④	10	10	15	60	10	30

[정답] ④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① 삭제 <2018. 3. 20.>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0.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 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난로’에 대한 설명이다. () 안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 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 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① | 0.5 | 0.6 |
| ② | 0.6 | 0.6 |
| ③ | 0.5 | 0.5 |
| ④ | 0.6 | 0.5 |

[정답] ②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① 소화기 및 시각경보기
- ②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 ③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 ④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정답] ④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은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
- ③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의 경우 50cm²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정답] ③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라. 압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안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 |
|-----------|---------|
| ㉠ | ㉡ |
| ① 스프링클러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 ② 포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 ③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 ④ 포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정답] ③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린생활시설 - 한의원, 치과의원
- ② 문화 및 집회시설 - 동물원, 식물원
- ③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항공기격납고
- ④ 숙박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정답] ④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물 중 화재위험작업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5제2항·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m²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m²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m²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
조명등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중앙소방기
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안전기준,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연면적 10만²m²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정답] ④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
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 ① 10년 ② 15년 ③ 20년 ④ 25년

[정답] 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
품)

-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
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정답] ③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② 생략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격납고
- ② 연면적 600m²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전산실
- ④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정답] ②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설·발전설·변전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설·발전설 및 변전설은 제외한다)·충전지설·통신기기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① 구조대 | ② 방열복 |
| ③ 공기호흡기 | ④ 인공소생기 |

[정답] 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 1) 피난사다리
- 2) 구조대
- 3) 완강기
-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공무원저널